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48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진성준·김병기·허성무

윤종군 · 김태년 · 서미화

박홍근 • 윤준병 • 박해철

문진석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 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 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4조의2(보조금 관리의 특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이하 "보조금명세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조금명세서를 종합하여 총괄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5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세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보조금명세서 및 총괄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성과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84조의2(보조금 관리의 특례) |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
| | 재정법」 제54조에 따라 지방 |
| | 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
| | 의 교부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
| | 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회계에 |
| | 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 |
| | 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 | 한 명세서(이하 "보조금명세서" |
| | 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
| | <u>한다.</u> |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
| | 따라 제출받은 보조금명세서를 |
| | 종합하여 총괄보조금명세서를 |
| | <u>작성하여야 한다.</u> |
|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작성 |
| | 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매 회 |
| | 계연도가 끝난 후 5개월 이내 |
| | 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
| ~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역 |
| |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